

광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56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변론 종결2021. 6. 11.

판결 선고2021.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7. 2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7. 29. 각각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을 각 37,853,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5. 12. 21. 체결된 상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20,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용역업무의 분담 등

- 원고는 LAN, WAN 전산장비 및 통신부자재 판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장비 공사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구축, 자문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그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정보처리, 통신, 전자 등 기기 및 부품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1. 29. 'F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위 재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4월 하순경까지 F와 기술협상을 진행하였다.
- G는 그 무렵 F와 공사대금 약 162억 원에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중 네트워크 장비 설치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대금 7,614,172,5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다시 I, C, J, 피고 등(이하 'I 등 중간업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의 흐름 및 주된 계약 내용은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DIAGRAM: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흐름도(이미지 생략)

H	C	F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용 네트워크(L4)장비 및 시설구축공사	2015. 7. 29.	2015. 12. 11.	2,217,710,000
피고	F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용 IP관리솔루션/관제센터개선/통합관리NMS시스템 구축건	2015. 7. 29.	2015. 12. 17.	800,800,000	
피고	D	F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용 IP관리솔루션/관제센터개선/통합관리NMS시스템 구축건	2015. 7. 29.	2015. 12. 17.	762,946,360

○ D는 2014년경부터 G와 함께 이 사건 사업참여를 준비해왔는데, G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되자 G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권을 수주하여 각 업체에게 용역업무를 분담해주는 역할인 속칭 '마더 업체'의 역할을 자처하며 H, I 등 중간업체와 함께 네트워크 설비인 HP장비 납품을 위한 제안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다.

○ D는 시공 경험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에 H, I 등 중간업체, D는 H이 하도급사로서 G와 계약을 체결하고, H이 I 등 중간업체와, I 등 중간업체가 다시 D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나. F의 M 장비 채택에 따른 D와 원고와의 계약 체결 등

○ D는 G와 F 사이의 기술협상에 참여하면서 F에 네트워크 설비로 HP장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F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HP장비가 아닌 M 장비를 채택하였고, 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D와 원고는 2015. 6. 16. 대금을 3,22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 기간을 2015. 6. 15.부터 2015. 12. 31.까지, 대금 지급조건을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 인·검수 완료 후 100%, 원청 대지급기준에 의함' 및 '완료 후 현금(원청 수금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의 F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용 IP/보안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I 등 중간업체 중 일부 업체는 F이 HP장비가 아닌 M 장비를 채택하여 HP장비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G의 직원인 N은 D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이들의 민원 처리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상계 및 D의 원고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 G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로부터 검수를 받은 다음 2015. 12. 10. H에 약정한 공사대금 7,614,172,500원을 지급하였다. H은 2015. 12. 11. C에 2,217,710,000원을, C는 2015. 12. 17. 피고에게 800,800,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D에 대해 별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채권 382,742,360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5. 12. 21.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D에 지급해야 할 762,946,360원 중 382,742,360원과 상계하였다. 또한 피고와 D는 이 사건 사업참여를 위한 제안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조력을 제공한 피고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37,853,64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37,853,640원을 D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380,204,000원(= 762,946,360원 - 382,742,36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342,350,360원(= 380,204,000원 - 37,853,640원)을 2015. 12. 21. D에 지급하였다.

○ D는 2015. 12. 14.부터 2016. 5. 2.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11억 6,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남은 20억 6,8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7, 19, 22, 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D는 2015년 6월경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였는데다 기왕의 채무가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D는 H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C,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9.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D가 피고에 대해 37,853,64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D는 이러한 허위 계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37,853,64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물품공급계약은 사해행위로서 37,853,6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와 D는 2015. 12. 21. 실제로는 피고가 D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통모하여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 대금 중 382,742,6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D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D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위 상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허위로 부담한 채무액 37,853,640원 및 상계처리한 채무액 382,742,630원의 합계 420,596,270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420,596,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857)에서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이 위 신청에 따라 2018. 4. 4.경 위 법원으로 E에 대한 수사기록[원고가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위 수사기록이 송부된 2018. 4. 4.에는 D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8.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서 송부한 E에 관한 수사기록이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서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분담을 알 수 있는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물품구매계약서 등에 대해 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고소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송부된 수사기록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었고, ② E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G의 직원인 N이나 H의 대표 O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구조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을 뿐이었는데, ③ 원고는 E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2019. 2. 14.경 그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서야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2015. 7. 29.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만을 2015년 12월경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8. 4. 4.경 피고와 D 사이의 물품계약 체결 및 피고의 상계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것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아닌 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채무자인 D의 법률행위가 아닌, 피고와 C 사이의 법률행위인 물품구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및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부 판단 원고와 D 사이에 2015. 6. 16. 체결된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은 원고의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 후 지급한다는 것이고, G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로부터 검수를 받은 다음 2015. 12. 10. H에 약정한 공사대금 7,614,172,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를 마치고 이에 대해 F의 검수를 받은 2015년 12월 초경 D에 대하여 3,229,60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 채권취득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D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정보통신장비 설치 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 하나의 업체가 우선 사업권을 수주하는 일명 '마더 업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업체들과 설치 및 납품 업무를 분담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관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D는 G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4년경부터 G와 함께 이 사건 사업참여를 준비해왔고, G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되자 H, I 등 중간업체와 함께 네트워크 설비인 HP장비 납품을 위한 제안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다. 즉, D, H, I 등 중간업체는 원고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③ D는 피고에 대한 762,946,360원 상당의 채권 외에도 H, I, C, J, K·L와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약 2,744,329,000원¹⁾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총 3,507,275,360원의 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원고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④ F의 기존 전력설비로는 M 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가 전력설비 설치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발주처인 F, 원도급사인 G는 D에 대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는 결국 D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5. 7. 29.에는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사해행위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기초 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경과 즉, ㉠ 피고는 L2 스위치 제조 및 판매사로서 D와 함께 이 사건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피고의 인력을 제공하였는데, ㉡ F이 M 장비를 채택하면서 피고가 L2 스위치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D로서는 피고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었고, ㉢ 피고는 D와의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일부인

342,350,360원을 D에 실제로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거나, D가 피고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2015. 12. 21.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청구 및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를 마치고 이에 대해 F의 검수를 받은 2015년 12월 초경 D에 대하여 3,229,6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중 1,161,600,000원을 D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남은 2,068,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13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전혀 없거나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2015. 6. 16. 당시 1,291,056,579원의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5. 12. 21.경에도 재무상태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D가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피고가 D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와 통모하여 2015. 12. 21.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통신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L2, L3 스위치를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로서 D와는

별개의 회사이고, D의 대표인 E이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2015. 5. 29.부터 2015. 6. 25.까지 L3 스위치 관련 물품을 D에 납품하였고, 2015. 9. 30. D에 품목명을 'P구축사업'으로, 그 공급가액을 347,94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미수금 382,742,360원(부가가치세 34,794,760원 포함)을 청구하였다. D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스위치 등을 납품받아 2015. 9. 30.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382,742,63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는 실제로 피고에 대해 별건 공사에 따른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D는 2015. 12. 24. 369,600,000원, 2015. 12. 30. 572,000,000원, 2016. 2. 25. 200,000,000원, 2016. 5. 2. 20,000,000원 합계 1,161,600,000원을 원고에게 그 물품 대금으로서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E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H, I 등 중간업체, 피고 등 많은 업체들과 허위 거래를 공모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면, 원고에게 1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상회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대리인이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은, 상계조항을 포함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수익자는 물론 채무자도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 확정일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D가 물품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와 D 사이에 2015. 12. 21.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2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일호

판사이제승

판사김동희

1) H 227,529,000원, 1 440,000,000원, C 937,400,200원, K·L 369,600,000원, J
769,799,800원 합계 2,744,329,000원